

## 중앙행정심판위원회

### 재 결

사 건 2024-2325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
청 구 인 ○○○  
○○○시  
피 청 구 인 □□□□  
심 판 청 구 일 2024. 2. 5.

### 주 문

피청구인이 2023. 12. 19. 청구인에게 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일부지급 통보처분을 취소한다.

#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# 이 유

#### 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2023. 10. 10. 피청구인에게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(이하 ‘이 사건 지원금’이라 한다)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고, 2023. 12. 11.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○○원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였으나, 피청구인은 2023. 12. 19. 청구인에게 훈련시간

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(○○원)만 지급하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거부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## 2. 청구인 주장

가. 2023. 3. 21. 시행된 「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」(이하 ‘이 사건 지침 1’이라 한다)에는 훈련비는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요건만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, 2023. 9. 26. 개정·시행된 「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」(이하 ‘이 사건 지침 2’라 한다)의 요건에 ‘과정별료’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.

나. 이 사건 지침 2는 2023. 10. 23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시(2023. 10. 10.)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,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개정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며,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하여 보완 등의 요청 없이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(2023. 10. 30.)하였고, 동 승인사항에 따라 훈련을 실시했음에도 지원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으며, 이 사건 지침 2가 적용될 줄 알았다면 위와 같은 훈련기간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.

## 3. 피청구인 주장

가. 이 사건 지침 1, 2에 동 지침들의 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, 이 사건 지침 1 중 ‘최소 1개월 이상 교육 필요’는 모든 과정마다 1개월 이상의 훈련시간이 되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.

나.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참여 승인 단계에서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요건까지 검토하기는 어렵고,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접수일(2023. 10. 10.)은 이 사건 지침 2의 시행일 이후로 이 사건 지침 2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과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.

#### 4. 관계법령

고용정책기본법 제6조

#### 5. 인정사실

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, 사업 참여 신청서, 지원금 신청서, 지원금 시행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가.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지침 1, 2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, 이 사건 지침 1은 2023. 3. 21., 이 사건 지침 2는 2023. 10. 23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각 등록되었다.

- 다 음 -

##### 1) 이 사건 지침 1

○ (총칙) 지침 시행일: 이 지침은 2023년 3월 21일부터 시행

○ (훈련비 지원 내용) 지원기간: 참여 기업당 최대 12개월 지원

\* 최소 1개월 이상 교육 필요

○ (참여 신청, 심사 및 승인) 신청서 반려: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참여 신청서 및 직무심화·전환·재배치·적응·전직지원 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
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할 수 있음

-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
-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
-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
## 2) 이 사건 지침 2

○ (총칙) 지침 시행일: 이 지침은 2023년 9월 26일부터 시행

○ (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) 지원요건: 근로자들에 대해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 심화·전환·재배치·적응을 위한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를 1개월 이상\* 또는 20시간 이상 실시

\* 훈련 시작일과 훈련 종료일 간격으로 산정

\*\* 각 훈련 등 과정별로 1개월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

○ (참여 신청, 심사 및 승인) 신청서 반려: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참여 신청서 등을 사전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할 수 있음

-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
-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
-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
나. 청구인은 2023. 10. 10.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및 이 사건 지원금 직무심화·전환·재배치·적응·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였고, 피청구인은 2023. 10. 30. 청구인에게 8명을 훈련 대상자로 하는 일부승인 통지를 하였으며, 일부승인의 세부내역은 별지 1과 같다.

다. 청구인은 2023. 12. 11.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 훈련 승인 대상자 8명 중 4명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 ○○원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였고, 훈련의 세부내용은 별지 2와 같다.

라. 피청구인은 2023. 12. 19. 청구인에게 훈련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인 4개의 훈련(○○ 전문가 양성, ○○ 관리, ○○ Tutorial, ○○코딩)에 대하여만 지원금(○○원)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## 6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### 가. 관계법령의 내용

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6조제1항제3호·제4호·제7호·제9호에 따르면, 국가는 근로자의 실업 예방,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(제3호), 산업·직업·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(제4호),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, 인력의 확보,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(제7호),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, 장려금,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(제9호)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### 나. 판단

1)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시기(2023. 10. 10.)가 이 사건 지침 2의 시행일(2023. 9. 26.) 이후이므로 이 사건 지침 2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시 이 사건 지침 2의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, 이 사건 지침 2가 2023. 10. 23.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 등록된 사실을 고려하면,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, 이

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당시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이 사건 지침 2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.

2)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참여 승인 단계에서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요건까지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지침 1, 2에는 사업 참여 신청 시 반려 조건으로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등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, 교육 시간 자체는 법률사실이며, 이 사건 지침 1은 ‘최소 1개월 이상 교육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, 1개월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 1의 ‘최소 1개월 이상 교육’ 요건을 모든 과정마다 1개월 이상 교육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시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를 승인하였고, 동 승인행위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도 않는다.

3) 또한, 이 사건 지원금 제도의 취지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며, 청구인이 승인 받은 훈련내용이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.

4) 위 기재사항을 종합하면,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 사건 지침 1의 요건을 신뢰하였다고 보이고, 동 신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으며, 이 사건 지원금 사업 참여 승인을 통해 실제 근로자에게 훈련을 제공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,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훈련

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, 피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.

## 7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

2024. 4. 9.

중앙행정심판위원회



[별지 1]

○ 일부승인 세부내역

번호	부서	성명	교육			
			과정명	일정	집체일수	비용(원)
1	기획	○	○○ 실무	2023.10.26	1	○○
		○	○○ 전문가 양성	2023.11.13~2023.11.16	4	○○
		○	○○ 실무	2023.11.24	1	○○
		○	○○ 작성 노하우	2023.11.27~2023.11.29	3	○○
2	홍보	○	○○ 기초	2023.11.06~2023.11.10	5	○○
		○				
		○				
3	정보	○	○○ 실무	2023.10.23~2023.10.25	3	○○
		○	○○ 입문	2023.11.20~2023.11.21	2	○○
		○	○○ 전략	2023.11.29~2023.12.01	3	○○
4	정보	○	○○ 실무	2023.10.30~2023.11.01	3	○○
		○	○○역량강화	2023.11.13~2023.11.15	3	○○
		○				
5	정보	○	○○ 실무	2023.10.30~2023.11.01	3	○○
		○	○○ 역량강화	2023.12.11~2023.12.13	3	○○
6	개발	○	○○ 사용	결제일 ~ 무제한 수강	0	○○
		○	○○ 관리		0	○○
		○	○○ in 2023		0	○○
		○	○○ Course		0	○○
		○	○○ in 2023		0	○○
		○	○○ 코딩		0	○○
		○	○○ 자격증!		0	○○
7		○	○○ 자격증!		0	○○



			○○ 사용		0	○○
			○○ 관리		0	○○
		○	○○ 코스		0	○○
		○	○○ 코스		0	○○
			○○ Tutorial		0	○○
			○○ 클래스		0	○○
8	생산	○	○○ 기본	2023.11.16~2023.11.17	2	○○
		○	○○ 실무	2023.12.11~2023.12.12	2	○○
		○	○○ 실무	2023.11.13~2023.11.15	3	○○

[별지 2]

○ 훈련의 세부내용

연 번	훈련 대상자	교육과정명	교육시간 (시간)	교육비 등 합계(원)
1	○○○	○○ 실무	7	○○
2		○○ 전문가 양성	28	○○
3		○○ 실무	7	○○
4		○○ 노하우	18	○○
5	○○○	○○ 입문	12	○○
6	○○○	○○ 사용	17	○○
7		○○ 관리	22	○○
8		○○ 자격증!	8.5	○○
9	○○○	○○ in 2023	19.5	○○
10		○○ Course	13.5	○○
11		○○ in 2023	12	○○
12		○○ 코딩	30	○○
13		○○ 코스	10.5	○○
14	○○○	○○ 코스	10	○○
15		○○ Tutorial	29.5	○○
16		○○ 클래스	9	○○

※ 지급된 교육비 등은 굵은 글씨로 기재함. 끝.